

제2기 도민인권지킴이단 구성·운영계획

- ❖ 도민인권 보호·증진 사업을 위해 운영 중인 도민인권지킴이단의 제1기 활동기간 만료('17.9.22)에 따라 제2기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함
- ※ 1기 운영결과 분석 및 개선(활성화) 방안에 중점을 두고 구성

I 기본 방향

- (구 성) 기준의 명확화로 인권에 대한 기본 소양있는 인사로 구성
 - 자발적 참여 인사 중심으로 하며, 분야별(노인, 여성 등) 전문성 고려
 - 시군의 인권조례 제정 등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시군의견 고려
 - ※ 전 시군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되 인위적 배정 등은 지양
- (운 영) 도시군 연계된 통합 활동 프로그램 다양화로 활성화 도모
 - 지킴이단의 인권역량 강화 워크숍 등 정례화, 활동 영역 공감대 형성
 - 자치회 조직 등 자발적 활동 확대를 위한 예산 등 행정적 지원 강화
 - ※ 특히, 모범사례(아산시 등) 공유를 통해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·추진

II 구성·운영 개요

- (구성배경) 도민들의 자발적인 생활 속에서 인권실천 활동 전개
 - 도민참여단 구성('14.8 / 105명) : 도민인권 선언('14.10)
- (구성근거)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
- (구성인원) 150명 내외(공모 우선하되 시군 추천 병행, 인권위원회 심사)
 - 1기 규모로 구성, 자발적 참여 가능한 인사 중심으로 교육수료 의무화
- (운영기간) 위촉일('17. 12월중) 부터 2년간
 - ※ 향후 통합 거버넌스 구성 및 시군 여건 등을 고려 운영기간 조정
- (주요기능 및 임무) 인권시책 모니터링 및 인권문화 확산

- ▶ 지역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(충청남도 인권센터)
- ▶ 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모니터링(인권교육 및 실태조사 참여 등)
- ▶ 지역사회 인권옹호자로서 제도 개선사항 제안
- ▶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

III 구성·운영 세부계획

1 구성 계획

- (규 모) 150명 내외, 시·군 단위로 소모임 구성(최소 5명 이상)
 - 도·시군 인권위원, 제1기 참여자 우선 고려(워크숍 참여 2회 이상), 지역 인권활동가 발굴 등을 고려 다양한 도민 참여토록 고려
 - 분야별(7개) 특화를 통해 보다 전문화된 활동 가능토록 구성
 - * 아동·청소년, 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여성, 농어업인, 시민단체, 기타 등
- (모 집) 자율 모집(공모) 후, 시·군 균형있는 구성을 위해 시군추천 병행
 - 선발기준에 의거 도 인권위원회(정책제도소위)에서 심사 진행
 - ※ 심사기준(별도 마련) : 참여의지, 전문성, 현장활동 경험 등 고려
- (교 육) 참여자의 인권역량 향상 및 참여의지 확대를 위해 인권교육(20시간, 3일) 과정을 운영하며 최종 선발자는 교육 이수자로 한정
 - 다만, 참여자 일정 등을 고려하여 14시간(2일) 이상 참여자로 구성

[모집 및 위촉 일정(안)]

인권위원회 자문	⇨	공모 +시·군 추천	⇨	심사·선발 (도 인권위)	⇨	역량강화 교육	⇨	위촉 (발대식)
8.29까지		8.30~9.18(20일)		9월말		10~11월		12월

2 운영 계획

- (대 우) 무보수 명예직, 필요시 출장비 등 실비 지급
- (활 동) 시군별 자치회 조직·운영을 통해 지역의 인권전도사 역할 담당
 - 인권문화 확산, 인권침해 행위 제보, 인권시책 모니터링, 제도개선 제안 등
 - 특히, 현장의 풀뿌리 조직화를 통한 지역내 인권역량 향상 및 확산에 중점
 - * 지역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 활동계획 수립 추진(시군과 협의)
- (제 보)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도(인권센터)에 제보하여 구제절차, 소송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교역할 수행, 해당지역의 지속적인 인권예방 모니터링 실시

⇨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충남인권센터에 제보하여 도민이 구제절차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교역할 수행

【도민인권지킴이단 세부 운영계획】

□ **자치회 조직운영**

- (방 법) 시군별 자율구성 원칙, 간사 1명씩 선출(15명)
 - 시군별 연락사항 전파 및 밴드(활동내용 게시) 등 운영
- (학 습) 분기별 2~3회 내외 시·군별 간사 주재 자치활동 전개
 - ⇒ 자치회 학습에 인권강사 요청 시 강사 지원(도)

□ **활동지원 및 사기진작**

- 활동에 필요한 자료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
- 우수 지킴이는 도지사 표창 및 선진지 인권현장 탐방 추진
 - ※ 도·시군 예산 등 행정적 지원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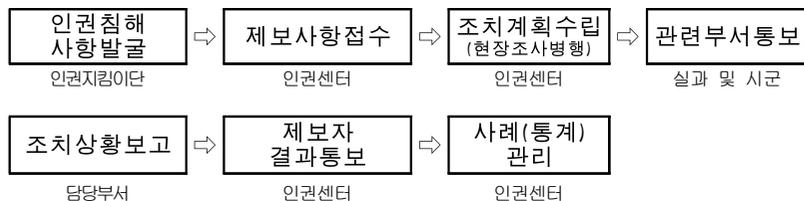
□ **전체 워크숍(연찬회) 개최**

- (시 기) 연 2회 / 장소 : 권역별 순회 개최
- (대 상) 인권지킴이단, 도·시군 인권위원회 등
- (내 용) 인권강사 초청 특강, 활동 및 우수 사례공유, 발전방향 토론 등

□ **인권침해 제보 및 처리절차**

- (대 상) 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이나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차원의 제도개선 사항
- (방 법) 전화, 문자, 밴드, 이메일(붙임 : 제보서식 참고)
- (제 보) 충청남도 인권센터 ☎ 635-3614
- (절 차) 도 및 시군에서 처리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, 국가인권위나 중앙부처 등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기관 이관(전달)

※ **제보사건 처리절차**



붙임 1

「도민인권지킴이단」 구성·운영 근거

[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 10조]

<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>

제4조(책무) ①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,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10조(인권지킴이단의 구성·운영) ①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**충청남도 도민인권 지킴이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**

② 인권지킴이단은 **공개모집을 원칙**으로 하되,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부족할 경우 전문분야의 인원이 **필요할 경우에는 시장·군수의 추천**을 받아 **도지사가 위촉**한다.

③ 인권지킴이단은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**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**
2. **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모니터링**
3. **제도 개선사항 제안**
4. **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**

④ 도지사는 제3항의 임무를 수행한 인권지킴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**필요한 실비를 지급**할 수 있다.

⑤ 인권지킴이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11조(경비지원)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, 관련 기관·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2. **관련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내 및 국제행사**
3. **그 밖에 도지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사업**